

내규 신구조문 비교표(안)

한국전자금융 2017. 8. 1.

1. 공시정보관리규정

- 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('17. 5. 23.)내용을 반영하여 당 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개정

개정전	개정후
제 1 조(목 적)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시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 1 조(목 적)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시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<u>정하고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공시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</u> 목적으로 한다.

개정전	개정후
제 3 조(용어의 정의) ①~④ (생략) ⑤“공시책임자”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거래소의 공시규정 제 44 조 제 1 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신고된 자를 말한다. ⑥~⑬ (생략) ⑭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.	제 3 조(용어의 정의) ①~④ (생략) ⑤“공시책임자”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거래소의 공시규정 제 44 조 제 1 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신고된 자를 <u>말하며, “임원”이라 함은 이사(상법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 및 감사위원을 말한다.</u> ⑥~⑬ (생략) <u>⑭“내부자거래”라 함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.</u> ⑮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.
제 4 조(대표이사) ①~② (생략)	제 4 조(대표이사) ①~② (생략) <u>③대표이사는 자발적, 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

개정전	개정후
제 5 조(공시책임자) 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 ②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.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(관련 서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검토, 승인, 시행에 관한 업무 2.~5. (생략) 6. 공시 담당 부서에 대한 지휘 및 감독 7.~8. (생략) 9.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. 1.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2.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,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④ (생략)	제 5 조(공시책임자) 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<u>지체 없이</u>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 ②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.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(관련 서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검토, 승인, 시행에 관한 업무 <u>및 해당 내용의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</u> 2.~5. (생략) 6. <u>공시정보를 관리하거나 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</u> 7.~8. (생략) <u>9. 공시통제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</u> <u>10.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. 1. <u>공시정보와</u>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2.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,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④ (생략) <u>⑤공시책임자는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</u>

개정전	개정후
제 6 조(공시담당부서) ①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. 이 중 1 인은 공시규정 제 44 조 제 2 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. ②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.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3.~6. (생략)	제 6 조(공시담당부서) ①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. 이 중 1 인은 공시규정 제 44 조 제 2 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<u>하며, 거래소에 이를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.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</u> ②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. 공시서류의 작성 및 <u>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</u> 3.~6. (생략)
제 7 조(사업부서) ①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. 1.~4. (생략) ② (생략)	제 7 조(사업부서) ①<u>임원 및</u>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공시책임자 및</u>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. 1.~4. (생략) ② (생략) ③<u>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 1 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서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부서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.</u>

개정전	개정후
신 설	제 7 조의 2(최대주주)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<u>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u>
신 설	제 7 조의 3(종속회사 공시정보의 집중) ①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한 공시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당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②제 1 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공시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,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③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신 설	제 8 조의 2(공시대상의 확인) 본 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개정전	개정후
신 설	<u>제 11 조의 2(공시 후의 사후조치)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시규정 제 30 조에 따라 정정공시 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u>
제 24 조(보도자료의 배포) ① (생략) ②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공정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공정공시하여야 한다.	제 24 조(보도자료의 배포) ① (생략) ②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공정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<u>보도자료 배포 전까지</u> 공정공시하여야 한다.
제 26 조(보도내용의 사후점검)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 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는 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 26 조(보도내용의 사후점검) ①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 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는 <u>대표이사에게 보고 후</u>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u>②공시책임자, 공시담당자 및 공시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u> <u>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내용은 당사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우 및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취재요청에 당사 관련자가 응하여 그 결과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준용한다.</u>

개정전	개정후
제 27 조(언론사의 취재등) ①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당사에 취재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취재등에 응할 수 있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취재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. 1. 대표이사 2. 공시책임자 3. IR 담당임원 4. 재무담당임원 ② (생략) ③공시담당부서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 27 조(언론사의 취재등) ①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당사에 취재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<u>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.</u>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<u>다음 각 호의 자 중</u> 취재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. 1. IR 담당임원 2. 재무담당임원 3. 관련 부서의 임원 4. 관련 부서의 직원 ② (생략)
제 28 조(시장풍문) ①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②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련정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③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제 28 조(시장풍문) ①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②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<u>확인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</u> 경우에는 즉시 관련정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③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개정전	개정후
제 29 조(정보제공 요구) ①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②전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(또는 정보제공 전까지)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	제 29 조(정보제공 요구) ①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u>②임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당사의 거래상대방, 외부감사인, 대리인, 당사와 법률자문 또는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공시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u> ③제 1 항의 결정 또는 제 2 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(또는 정보제공 전까지)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u>단, 공시규정 제 15 조에서 규정한 적용예외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
개정전	개정후
제 30 조(기업설명회) ①투자설명회, 애널리스트 간담회등 기업설명회(이하 “기업설명회”라 한다)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문답 내용을 문서로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, 장소,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 ③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, 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	제 30 조(기업설명회) ①투자설명회, 애널리스트 간담회등 기업설명회(이하 “기업설명회”라 한다)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문답 내용을 문서로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, 장소, 대상 <u>및 내용</u> 등을 통지하여야 <u>하며,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개최 전일까지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,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.</u> ③<u>모든 임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</u>
제 32 조(교육) ①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,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②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 또는 코스닥협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 32 조(교육) ①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, 시행하여야 한다. <u>이 때,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 36 조 및 제 44 조 제 5 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,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.</u> ②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 또는 코스닥협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③<u>대표이사는 임원, 직원에게 본 규정 제 19 조에서 제 23 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,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 회 이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.</u>

개정전	개정후
제 34 조(관련 규정의 개정) (본조개정 2014.9.1.) ① 본 규정은 <u>이사회의 위임에 의하여</u> 대표이사가 개폐한다. ② 본 규정과 관련된 각종 법령(감독기관 지침 등 포함)이 제정 또는 개폐될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본 규정을 개정토록 한다.	제 34 조(관련 규정의 개정) (본조개정 2014.9.1.) ① 본 규정은 대표이사가 개폐한다. ② 본 규정과 관련된 각종 법령(감독기관 지침 등 포함)이 제정 또는 개폐될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본 규정을 개정토록 한다.
신 설	부 칙 제1조(적용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